



가가

[2015.2.3.] [26071 , 2015.2.3.,]

(가가) 044 - 215 - 4231

1

1 () 「 가가 」

2 () 「 가가 」 (" ") 2 1

1. , , , , (有體物)

2. , 가 ,

2 1 , , 1 가 가

3 () 2 2 가 가

(役務)

1.

2.

3.

4.

5.

6. . ,

7. ,

8. ,

9.

10.

11. , 가

12. ,

13. 가 가

14.

1 1 6 (財貨)

4 ()

3 1

1 2

5 () 2 4 " " 109 1

6 () 5 2

1. :

2. :
3. 1 2 :

7 () 5 3 .

1. :
2. :

()
3. 1 2 :

13 1
1 3

) 「

(「 」 1 1 .

가

25

가 (

365

가

365)

8 1

6

6

6

가

8 () 6 2 .

| 사업 | 사업장의 범위 | |
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광업 | 광업사무소의 소재지.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(鑛區)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. | |
| 2. 제조업 |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. 다만,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(貯油所)는 제외한다. | |
| 3. 건설업·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| 가. 법인인 경우 |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(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) |
| | 나. 개인인 경우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| 다.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|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(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) |
| | 라.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|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4.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 |
| 5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 |
| 6.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다단계판매원(이하 "다단계판매원"이라 한다)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|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(이하 "다단계판매업자"라 한다)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. 다만,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. | |
| 7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 |
| 8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| 가. 법인인 경우 | 법인의 본점 소재지 |
| | 나. 개인인 경우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9.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 |

| | |
|---|---|
| 10. 「한국철도공사법」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|
| 11. 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「우편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12. 「전기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13.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. 다만, 위임·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·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. |
| 14. 「송유관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|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|
| 15. 부동산임대업 |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|

1.

가

(鑛區)

가

가

가

2.

「 10 5
(貯油所)

3.

가.

()

()

4.

5. 「 」 76

6. 「 」 「 」

(

13

(

"

"

)

"

"

)

.

,

가

.

7. 「

」

가

8. 「

」

가.

가

9. .

10. 「 」
가

11. 「
」
「 」
15 1

15.

1 15

가

1. 「

2. 「

3. 「

4. 「

5. 「

6. 「

7. 「

8. 「

9. 「

10. 「

11. 「

가

(" ")

1

3

가

, 1

9

8

1

3

가

「

」

120

」

94

9 ()

6

5

1

(荷置場)

10

64

4

1.

(" ")

2.

3.

1

10

10 ()

6

5

2

가

8

(

"

"

)

6

5

2

10

(

)

10

- 1.
- 2.
- 3.
- 4.

2

가

10

- 1.
- 2.
- 3.

11 () 8 1
()

- 1.
- 2.
- 3.
- 4.

1 (" 8 3 4 ") 1

1 2 .< [2014.2.21.>](#)

| 구분 | 첨부서류 |
|--|--|
| 1.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| 사업허가증 사본,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|
| 2.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| 임대차계약서 사본 |
| 3.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| 해당 부분의 도면 |
| 4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(이하 “금지금”이라 한다) 도매 및 소매업 |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|
| 5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|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|
| 6.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|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(이하 “종된 사업장”이라 한다)에 대한 이 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·업태(業態)·종목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|
| 7.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,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, 차량용 가스 충전업,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|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|
| 8.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|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|

8 1

가·

가

3

1

1

2

3

(, 「

」 2

「

」

)

5

가

8

1

3

8

1

가

「

」 15

가

10

1

, 69

가

8

1

6

8

가 「

」 15

5

「 」 168 「 」 111

가 가

14 1

1 2

8 1

「 」
가

1 4

(補正) 가

10

5

12 ()
4

8 5

, 8 3

54 4 5

11 8

가 「 」

15

1

13 ()
가

8 1
8 1
8 6

3 5
5

가
()

()

()

- 1.
- 2.
- 3.

1

(가

)

1

가 91

가가

(

)

(" ")

- 1.
- 2.
- 3.
- 4.

가

가, ,

1 ()
(

, ()

)

, 가,

1 (1) .
1

14 () 가 () .

1.
2. 「 」 13 1 2 가

3.
4. [8 3 (" ")] 가

5.
6.
7. , 가 (「 가 」 2 1 가 , 5 2)

8. 가
9. 가
10. 가
11. [「 」 5 가 (" 가 ")가 가 (" ")가 「 」

1 , 1 7 가 「 가 」 2 1 가 가

1. 1 1 11 :
2. 1 2 10 : 3 가 1 4 8

15 () 8 7 , 8 7 2

1. 가 6
2. 가 ,
3. 가 가· 가

4. 가 가가

5. 가 1 4

16 () 8 8 가가

17 () 가 20 92

- 1.
- 2.
- 3.

1

1

92

2

1

18 () 9 1

1. , , , , ,

2. 가 가

가

3. 가

4. , ,

5. (2 1 2)

1 1

1. (「 」 174

(가 가)

2. 가 (가 가)

3. 가 가 가 가 [31 1 5 (零) (" ")]

4. 「 가 「 가 8 6

(消費貸借)

1. 「 1 4 」 61 (62)

2. 「 」 (「 」 · 「 」)

3. 「 」, 「 」 가 가

19 (「 」 10 2 2 " , ") . < 2014.2.21., 2015.2.3.>

- 1.
2.
3.
4.

5. 「 」 2 1 「 」 16 3 10 2 2

6. 1 5 [2015.2.3.]

20 (「 」) 10 5 " 「 」 가

- 1. 가
2. 「 」

21 (「 」) 10 7 " 「 」

22 (「 」) 10 8 1 " 「 」 , 「 」

23 (「 」) 10 8 2 " 「 」 (「 」 46 2 47) 「 」 37 1 가 가)

. < 2014.2.21.>

- 1.
2.
3. .

24 (「 」 73 , 「 」 117 「 」 19 (物納)) 「 」 10 8 3 " 「 」

가 , 가

2 3 가 가 가 가 가

- 1.
- 2.
- 3.
- 4.

10

| 구분 | 공급시기 |
|---|------------------|
| 1. 법 제10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|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|
| 2.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| 재화를 반출하는 때 |
| 3.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| 재화를 증여하는 때 |
| 4.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| 제7조에 따른 폐업일 |

1. 10 1 · 2 4

2. 10 3

3. 10 5

4. 10 6

7

가

| 구분 | 공급시기 |
|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법 제21조제2항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출재화의 선(기)적일 |
| 2.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|
| 3.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|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|

1. 21 2 1 31 ()
1 1

2. 31 1 2 가

3. 31 1 3 5 가

가

가

18 2 1 2

| 구분 | 공급시기 |
|---|---------------|
| 1.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해당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넘겨받은 후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|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|
| 2. 해당 재화를 실물로 넘겨받는 것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경우 | 그 수입신고 수리일 |
| 3. 국내로부터 조달청 창고 또는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| 그 반입신고 수리일 |

1. 가

2.

3.

1 8 가 가

10 7
1 9 . , 10 7

1

9 가 가 「 」 가
1 9 .

29 ()

가 . , 2 3 16 2 가

- 1.
- 2.
- 3.
- 4.

16 2

- 1. 가 :
- 2. 가 :

가. 29 10 1
. 29 10 3
. 가 65 2

- 3. 가

가. 가 가 가 가
. 「 」 () 가 가
. 가

- 4. 가 「 」 4 3 가 :
- 1 2 가

30 () 17 4
"

- 1.
- 2. 28 3 4
- 3. 29 1 4

3
1

31 () 21 2 2 "

- 1. (「 」 154
156 가 「 」)
4
- 2. [(無換)
]
- 3. [(領收)
]
- 4. 가 [가 (加工賃) 가 (, , , 가 가
)]
- 5. 가 가 가
21 2 3 " "
- 1. 가 ()
- 2. 가 「 」 (7)
- 3. 가 「 」 ()
- 4. 가 「 」 (가 7)
- 5. 가 가 (" ")
가
가

32 () 23 2 "

- 1. 가
- 2.
- 3. (專用)

4. 가
5. , 가 32

가가

6. (常住)

7. 「 가 , 가

가.

8. <2015.2.3.>

9. 가 , 가

가. 「 」 17 1

「 」 115

2

34 (가) 26 1 1 가 (.)
" 가 ") 가 1 가

가

- 1.
- 2.
- 3.
- 4.
- 5.
- 6.
- 7.
- 8. ()
- 9. ()
- 10.
- 11.
- 12. 1 11 , ,
- 13. [「 」 7 1 (天日
- 鹽) (再製) .]
- 가
- 1. , 가
- 2. 1 가
- 3. 가
- 4. 가 가
- 26 1 1 , ,
- 1.

2. (性狀) 가
3. 2 가

35 () 26 1 5 (「」
「」 가) . <
[2014.1.1., 2014.1.28.>](#)

1. 「」 , , 가 . 「」
41 3 .
가. , , () ,
, , () ()
가) ()
. . . . , , , , ,

2. 「」 (接骨士), (鍼士), (灸士) 가

3. 「」 , , , ,
가

4. 「」 가

5. 「」 가 . ,

가. 「」 가

. 「」

. 「」 40 2

. 「」 2 2 가

. 가

6. 가

7. 「」 14 15 , 가

8. , 가 ,

9. 「」 2 8 가 가

10. 「」 45 . 가 「가

」 28 가 . 가 가 가

11. 「」 52 가 가

12. 「」 25 가 가

. 29

가

13. 「」 42

14. 「」 2 4

. 가

15. 「」 33 7 가 가

가

39 () 26 1 10 가 " " 200
 (20)
 26 1 10 " " 「 」 19
 21 24 .

40 () 26 1 11 .
 . < 2014.2.21., 2015.2.3.>

1. 「 」
 가. 가
 .
 .
 .
 .
 . ()
 . <2015.2.3.>

2. 「 」
 가. <2015.2.3.>
 . <2015.2.3.>
 . , 가 ,

1) 가 「 」 103 1 1 4
 7 (9 20)
 () . ,
 103 1 1 ,

2) 가 「 」 103 1 5 6

3) 가 「 」 103 1 5 6

4
 . (「 」 373 2 1 가
)

. (가 ,)

. <2015.2.3.>

. <2015.2.3.>

. <2015.2.3.>

. <2015.2.3.>

. <2015.2.3.>

. ()

3. <2015.2.3.>

4. 「 」

5. 「 」

6. 「 」

7. 「 」

8. 「 」 (. ,)

9. 「 」 ()

10. 「 」 가

11. 「 」 가

12. 「 」 가 . .

13. 「 」 가 「 . . , .

가 , . . , .

14. <2015.2.3.>

15. 「 」 가 .

16. 「 」 . . , .

. , .

17. 「 」 32 「 」 81 2

18. (, ,)

1 가 .

26 1 11 .

1 1 .

1. 「 」

2. 「 」

3. 「 」

4. 「 」

5. 「 」

6. 「 」

7. 「 」

8. <2014.12.30.>

1 26 1 11 .

1. , , , . , 가 .

2. . . , .

3.
4. 1 2
5.

41 () 26 1 12 (") ,

1. (, 「 」 2 3)

2. 5 (「 」 6 10) 가가 가 (" ")

1. 1 .
2. . , 1 .

42 (가) 26 1 15 (人的) 가)

1. 가 가 가

. 가 . 가 () . 가 ()

. 가 , (集金) 가 .

. 가 가 (筆耕) . 가

. 가 가

가
2. 가 가

가. 「 」 「 」
(法律救助)

가 가

「 」 40 「 가 」 2
가 가 ()

43 () 26 1 16 , ,

1. : , (「 」 9706)

2. : , ,

3. : , ,

4. : 「 」
, . .

44 () 26 1 17 " "

1.

2. 「 」

45 (, , , 가) 26

1 18 , , (救護), 가

. < 2014.2.21., 2015.2.3.>

1. 가 가 「 가 」 12
가

(實費)

2. (" ")

)가

3. 「 」 (,)
() (境內地)

4. 가

5. 「 」 105 1 가
가

6. 「 」 24 2 4 「 . 」 60 2 1

46 (가,) 26

1 19

가,

1. 「 」 15 1

2. 「 」

3. , , . , , . ,

가. 「 」 2 , 「 」 2

. 가,

4.

가. 35 1

. 35 5

47 () 26 1 20 " 가

가 「 」 12

1 26

1 20

48 () 가

26 2

49 (가) 27 1 가 (")

가 ") 34 1 2 . , 가

가

1

가

50 (,) 27 2 , 「 」

49 , , (手製)

51 () 27 3 . 가

1 5

, 가

1. (「 」 「 」) ,

, , ,

2. ,

3.

4. 「 . 」 8

5. 「 」 가

6. 가

52 () 27 4 .

1. (寺院) 가

2. 가

3. 가

53 (가) 27 11 가

1. 가

2. . ,

3. . , 가

4. ,

5. . . , 가

6. 가

7. . , 가

54 (가 가) 27 12

가 가 「 」 99 가 101 가

55 (가 가) 27 13

가 「 」 97 가 .

56 (가) 27 15 가 (無稅)

1.

2. 가

3. .

4.

5.

6.

7. . .

8. <2015.2.3.>

9. .

10. () 가

11. , , ,

. < 2014.2.21.>

1 . . 가 , . . 가 , . . 가 .

61 (가 가) 29 3 6 " 가 "

가 . < 2014.2.21., 2015.2.3.>

- 1. : 가
- 2. : 가
- 가.
- .
- .
- 3. : 가 가 . , 가 가가

가 가가 .

4. 「 」 : 「 」

5. 가 : 가 가 , 58 2 가가
 가 , 58 2 가가
 가 가

6. 가 29 2 3 가 :

1 1 ,

1
 7. 가 29 2 4 :
 가 가

. 1 1
 , 1
 8. 31 1 4 가 : 가

가 . 가 (가
) , 46 1 가 가
 . , 가 .
 가 가 , 가 .
 가 가 .

62 (가) 29 3 4 가(時價) 가 .

1. 가 가 3

2. 1 가 가 가 가 (가 가
 가 3
 가)

3. 1 2 가 가가 「 」 98 3 4
「 」 89 2 4 가

63 (가) 29 8 가
가 가 가 가

$$\text{공급가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공급가액} \times \frac{\text{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}}{\text{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$$

가 = 가 × 가

가

1 81 4 3 , 5 82 2 83
(" ") 29 8 가

가 가

$$\text{공급가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공급가액} \times \frac{\text{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}}{\text{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}}$$

가 = 가 × 가

1 가

1. 가 가 5
2. 가 50
- 3.

64 (가) 29 9 가
가 (" ") 가
가 < 2015.2.3.>

1. 「 가 」 99 가(" 가")가
 : 가 가 (按分) , 가가
 [28 ()가
 가 가 「 가 가
 」 2 9 가 가 가 가가 .]
 가 .
2. 가가 가가 : 가
 , 가가 가 (가 가)
 가가 가 가
3. 1 2 :
 65 (가) 29 10 1
 29 3 2 가 가 가
 . 가 가 가(1
)

$$\text{공급가액} = \frac{\text{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} \times \text{과세대상 기간의 일수} \times \frac{\text{계약기간 1년의 정기에금 이자율 (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)}}{365(\text{윤년에는 } 366)}$$

$$\text{가} = \frac{\text{가} \times \text{가}}{365(\text{ } 366)}$$

가 " " 1 " "

$$\text{임차 시 지불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} \times \frac{\text{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는 면적}}{\text{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임차한 부동산의 총면적}}$$

×

1 5 가

66 (가 가 가) 29 11 " 가 "

「 」 62 「 」 24 가 (" 가 "

) . 가 가 , 10 1 · 2 4 6

가 20 20 , 5 가 , 가 4 4

1.

$$\text{공급가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취득가액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$$

$$\text{가} 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dots\right)$$

2. 가

$$\text{공급가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취득가액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$$

$$\text{가} 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dots\right)$$

가 , 가 가 5 가

2

1.

$$\text{공급가액} = \frac{\text{해당 재화의 취득가액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 \times \frac{\text{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}}{\text{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}{\dots}$$

$$\text{가} 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dots\right) \times \dots$$

100

...

가

2. 가

$$\text{공급가액} = \frac{\text{해당 재화의 취득가액}}{100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\right) \times \frac{\text{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}}{\text{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$$

$$\text{가} 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frac{\text{가}}{\text{가}}\right) \times \text{가}$$

100

...

가

$$\frac{2}{2} \frac{3}{3} \text{가} \quad 38 \text{가} \quad \text{가}$$

2

67 () 32 1 2 " 12 2

32 1 5

- 1.
- 2.
- 3.
- 4.
5. 가
- 6.
- 7.
- 8.

73 5
32 1 1 4

1 4

68 (가) 32 2 " (" "

") .

가

가 3 가 「 」 45 1 57
(" ") 3

가 1 2 .

32 2 " "

1. 「 」 5 2 1 (全社的) 「
- 」 18 , 23 24
2. 「 」 18 , 23 24
- 3.
4. 가

4 1 • 2 4

32 3 " " " 32 1
32 3 " " 32 4
32 1 1 4

4 11

1. 「 」 가
2. 「 」 가 , 가
가 「 」 5 4 가
3. 「 가 」 가 가 가
4. 「 」 가
5. 「 」 2 3 가
6. 가 「 」 105 2
7. 「 」 2 5 가 가

32 5 4 7

가 가 가 4 3

가 가 가 4 3

1 11

69 ()

32 6

32 6 가

10 7

1 2

가

1

가

「

」

가

1

2

32 6

「

가

」

가

가

가

가

(

)

32 6

가

가

가

「

」

3

32 6

18 2 1

6

6

「

」

「

」

「

가

「

가

」

가

「

」

」

가

32 6

가

가

가

「

」

가

(

」

2

1

9

)

가

32 6

가

가

「

」

가

32 6

가

가

가

「

」

1

2

4

5

가

「

」

가

32 6

- 6. 가 : (陰) , , 5
 - 7. : (陰)
 - 8. : (陰)
 - 9. : (陰) , 1
- 가 1 가 (陰)

71 () 33 1 "

< 2014.2.21., 2015.2.3.>

- 1. , , 가
 - 2. , 가 ,
 - 3. 10 1 , 2 4 6
 - 4. 21 (31 1 5 , 2 1
2 4 ,
) , 22 23 (가 「 」
23 2)
 - 5. 33 2 1 , 2 , 5 (가) 8 24 1 1
) , 6 , 7 ()
 - 6. 65 1 2
 - 7. 「 」 2 10 15
 - 8. 53 2 3 가
 - 9. , ,
- 33 2 " " 88 4

72 () 35 1 32 1

「 」 28 2 , 38
 2 1 • 2 , 38 3 1 3 , 38 4 1 , 46 , 47 106 가가
 35 2
 . , 3 가
 「 」 38 3 1 35 2 2
 . < 2014.2.21.>
 35 2 2 " "

. < 2014.2.21.>

1.
 2.
 3. 1 2
 35 2 2 " 가 가
 " . < 2014.2.21.>

1. <2014.2.21.>
 2. 「 」 가
 .
 3. 가 가
 2 3 가가
 가
 (陰)
 1 5

73 () 36 1 2 " "

. < 2015.2.3.>

1.
 2. ()
 3.
 4. ,
 5.
 6.
 7. 109 2 7 (3 「 」 160 2 2)
 8. 「 」 「 」 15 1

9. 35 1
 10. 35 5 가
 11. 36 2 1 2
 12. 71 1 7
 13. 53 2 3 가
 14. 가

36 2 " 「 」 2 2 가

1. 10 가 가

2. 「 」 가

3. 「 」 가 , 가 가

4. 「 가 」 5 4 가

5. 「 」 가

6. 「 」 2 3 가 가

7. 「 」 2 5 가 가 가

1 1 3 , 5 (「 」 3
) , 7 , 8 , 12 14 2 가

32 1 2 .<

2015.2.3.>

1 4 , 5 (「 」 3
) , 6 9 11 가 가 1 2

가 32

1 2
1 14 가 1
, 가 10

32 1

.< 2015.2.3.>

36 1 가 71 1 가
. , 71 1 2 가 가

36

1. . . ()

2. 가

3.

4.

1 2 가 ()
) 7 가

3

74 () 39 1 1

1. 32 (, ") 46 1

(, ")

- 2. ") 「 」 25 1
32
「 」 25 3 102
- 3. 32
「 」 25 4
- 4. 32 가
- 5. 57 가 32 46 3
102

75 () 39 1 2

- 1. " " 가 11 5
- 2. 32 가
- 3. 가
- 4. (34 3)
32 2
- 5. 32 2 가
(34 3) ,
- 6. 51 1
가 48 49

76 <2014.2.21.>

- 77 () 39 1 4 「
」 78 「 」 48 , 49 3 50 .
- 78 () 39 1 5 " , " 19 .
- 79 () 39 1 6 " " 「 」 35 「
」 25 .
- 80 () 39 1 7 " " .
1. ,
2.

3. 가 가 가

81 () 40 (" ") (兼營) (實
地歸屬)

가 (가 . 82) ,

$$\text{면세 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} = \text{공통매입세액} \times \frac{\text{면세 공급가액}}{\text{총공급가액}}$$

''' = × 가

가

1

1. 가 가 5 ,

5

2. 5

3. 63 3 3 가 「 」 「 」

$$\text{면세 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} = \text{공통매입세액} \times \frac{\text{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}}{\text{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}}$$

''' = × 가

가

1

가 가 가

. , 3 1 2

1. 가 (가) 가 가

2. 가 가

3. 가 가

4 가 3

가 1

4 3

82 2

1 5

82 () 가 81 4
가 ,

가 가 ,

1. 81 4 1 2

$$\begin{aligned} \text{가산되거나 공} &= \text{총공동매입세액} \times \left(1 -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}}{\text{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}}\right) - \text{이미 공제한 세액} \\ \text{제되는 세액} & \quad \text{간의 면세공급가액} \\ & \quad 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} \\ & \quad \text{급가액이 확정되는} \\ & \quad \text{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 \end{aligned}$$

가 = × (1 - 가) - `

가

가

가

2. 81 4 3

$$\begin{aligned} \text{가산되거나 공} &= \text{총공동매입세액} \times \left(1 -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}}{\text{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}}\right) - \text{이미 공제한 세액} \\ \text{제되는 세액} & \quad \text{간의 면세사용면적} \\ & \quad 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} \\ & \quad \text{사용면적이 확정되는} \\ & \quad \text{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} \end{aligned}$$

가 = × (1 - 가) - `

83 () 41 가 가
 38 1 , 81 82 가 가
 가 (가 5
 1 가 가

66 2
 1.

$$\text{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매입세액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left(\frac{\text{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}}{\text{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}}\right)$$

$$\text{가} 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가}\right) \times \text{가}$$

2. 가

$$\text{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} = \text{해당 재화의 매입세액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left(\frac{\text{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}}{\text{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}}\right)$$

$$\text{가} 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가}\right) \times \text{가}$$

1 2 가 가 , 가 가

66 가 1 2 가 1
 2 가 1
 1 5

84 () 42 1 가가
 (34 1 1 가 , 2
) 가 (")
) . < 2014.1.1., 2015.2.3.>

| 구분 | | 을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1. 음식점업 | 가. 「개별소비세법」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장소의 경영자 | 104분의 4 |
| | 나.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| 108분의 8 |
| | 다.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| 106분의 6 |
| 2. 제조업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한정한다) | | 104분의 4 |
| 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| | 102분의 2 |

1. 가. 「 」 1 4 104 4

. 가 108 8

. 가 106 6

2. (「 」 2 104 4)

3. 1 2 102 2

1 가

(" ") 100 30(

2 100 50, 2 100 40)

2015 12 31 1 100 60, 1

2 100 55, 2 100 45

.< 2015.2.3.>

1 2 2

, 1 (歷年) 가 1 1

2 . 1 ("

1 ("

") 100 30(4

100 50, 4 100 40)

.< 2015.2.3.>

1. 1 가 1 가

100 75 100 25

2. 1

1 3 가

가 가 , .< 2015.2.3.>

가 42 1 ()

. 가

.< 2015.2.3.>

1. 「 」 163 「 」 121

2.

5 , ,

.< 2015.2.3.>

5 74 75 .< 2015.2.3.>

1 7

< 2015.2.3.>

85 (가) 가 39 1 7

가 43

66

2

1.

$$\text{공제되는 세액} = \frac{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}}{\text{매입세액}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$$

$$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가}\right)$$

2.

$$\text{공제되는 세액} = \frac{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}}{\text{매입세액}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$$

$$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가}\right)$$

가 43

가

가 66 가 2 가 5

1.

$$\text{공제되는 세액} = \frac{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}}{\text{매입세액}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에 사용·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에 사용·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$$

$$= \text{가} \times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가}\right) \times \text{가}$$

...

5

100

가

2. 가

$$\text{공제되는 세액} = \frac{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}}{100} \times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과세사업에 사용·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}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에 사용·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에 사용·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$$

가
 ...
 25

가 100 .

2 가 가

1. 3 1 2 가 가
2. 가 가
3. 가 가

.< 2015.2.3.>

1. 3 1 2 가.

$$\begin{array}{l}
 \text{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} \\
 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
업 등과 관련하
여 공제되지 아
니한 매입세액} \\
 \text{=}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
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
등의 공급가액이 확
정되는 과세기간의
과세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
등의 공급가액이 확
정되는 과세기간의
총공급가액}} - \text{이미 공
제한 매
입세액}
 \end{array}$$

$$\text{가} =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 - \text{이미 공제한 매입세액}$$

가

5

가

100

가

가

가

$$\begin{array}{l}
 \text{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} \\
 \text{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
업 등과 관련하
여 공제되지 아
니한 매입세액} \\
 \text{=}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
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
등의 공급가액이 확
정되는 과세기간의
과세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
등의 공급가액이 확
정되는 과세기간의
총공급가액}} - \text{이미 공
제한 매
입세액}
 \end{array}$$

$$\text{가} = \left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\right) 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}}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 - \text{이미 공제한 매입세액}$$

가

25

가

100

가

가

2. 3 3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가산되거나 공제되는 세액</p> | <p>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 업종과 관련하 여 공제되지 아 니한 매입세액</p> | $= \left(1 - \frac{5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}}{\text{과세기간의 수}}\right) \times$ | <p>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</p> | $\times \frac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}}{\text{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총사용면적}}$ | <p>이미 공 제한 매 입세액</p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가 43

가

가

1

4

가

1

6

가

가

가

)

가 5

83

1

7

가

86 (

)

44

1

가

38

43

,

"

가

()

(

)

1.

2.

[

(在工品)

]

3.

(

)

4.

5. 가 (,) 10 , 가
 1) 가 (가가
 1) (" "
) 3 4 66 2
 5
 1. 1 1 3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text{재고금액} \times \frac{10}{110} \times (1 - 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)$$

$$= \text{가}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110} \times 2 \text{ 가가})$$

2. 1 4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frac{\text{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}}{\text{가}} \times (1 - \frac{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}{\text{가}})$$

$$= \text{가} \times (1 - \frac{111}{110} \times 2 \text{ 가가})$$

3. 1 5
 가.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text{취득가액} \times (1 - \frac{10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가}}) \times \frac{10}{110} \times (1 - \frac{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}{\text{가}})$$

$$= \text{가} \times (1 - \frac{10}{100} \times \frac{\text{가}}{\text{가}})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110} \times 2 \text{ 가가})$$

가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text{취득가액} \times (1 - \frac{50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가}}) \times \frac{10}{110} \times (1 - \frac{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}{\text{가}})$$

$$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(1 - 50 \times \frac{\text{가}}{110})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가})$$

4. 1 5
가.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frac{\text{해당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}}{\text{가}} \times (1 - \frac{10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가}}) \times (1 - \frac{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}{\text{가}})$$

$$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(1 - \frac{\text{가}}{10} \times \frac{\text{가}}{\text{가}})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가})$$

가

$$\text{재고매입세액} = \frac{\text{해당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}}{\text{가}} \times (1 - \frac{50}{100} \times \frac{\text{경과된 과세기간의 수}}{\text{가}}) \times (1 - \frac{\text{제111조제2항의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}{\text{가}})$$

$$= \frac{\text{가}}{100} \times (1 - \frac{\text{가}}{50} \times \frac{\text{가}}{\text{가}})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가})$$

3 (가 " 111 2 가가 ") 가가

가

112 7

1 4

1

1

1

가

6

6

가

57

87 (" 「

)

45

1

"

」

55

2

「

」

19

2

1

(貸損金)

45

가

가가

가

5

1

(

57

가

가가

)

< 2015.2.3.>

45

1

가

,

45

3

가

45

1

45

4

91

1

가가

()

)

(

4

88 (

)

46

1

"

"

73

1

2

46

1

"

"

1. 「

」

가.

(가)

2. 「

」

126

3

(

가

가

)

46

1

"

"

1.

가

가

(

"

"

)

2.

가

가

46

3

"

"

1.

2.

(「

」

3

)

3.

4. 35 1

5. 35 5

6. 36 2 1 2

46 3 1 " " 74 1

46 3 2 " " 「 」 160 2 4 「 」

116 4

46 4 " " , , 가

1.

2. 가 가 가

3.

89 () 47 1 " "

200

47 1 100 .

5

1

90 () 48 1 · 2 4 가가 가

60 「 」 47 2 47 4 ,

46 1 · 2 47 1 .

48 1 4 가가

가가 (

) . , 107 4 .

1.

2.

3.

4. 54 1 (" · ")

5.

2 가가
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|--|
| 1.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이 있는 경우 |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|
| 2.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|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|
| 3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 받는 경우 | 전자화폐결제명세서 |
| 4.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|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|
| 5.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|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) |
| 6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| 현금매출명세서 |
| 7. 건물·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|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|
| 8.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|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 |
| 9.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,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| 영세율 매출명세서 |

1. 39

2. 46 1

3. 46 1

4. 46 3

5. 55 2
가

()

6. 55 1

7. · 가

8. 가가 ()

9. 21 24
 「 」 105 1 ,
 107 121 13

48 3 가가

| 구분 | 기간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1.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분 |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|
| 2.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분 |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|

1. 1 4 1 4 10

2. 2 10 1 10 10

48 4 " 가

1. 가 가

48 3 3 1

2. 107 48 , 49 54

2

2

1. 21 24 : 101

2. 「 」 105 1 : 「 」

106 12 「 . . .

가가

」 4

35 5

48 49

(가가 가

「 」 78

)

91 () 49 1 가가

가가

1.

- 2.
- 3. 가 .
- 4. .
- 5.

1 가가
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|--|
| 1.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| 사업양도신고서 |
| 2.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|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|
| 3.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|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|
| 4.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 받는 경우 | 전자화폐결제명세서 |
| 5.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 받는 경우 |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|
| 6.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|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(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) |
| 7.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. 다만,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. | 건물관리명세서 |
| 8. 음식·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| 사업장현황명세서 |
| 9.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| 현금매출명세서 |
| 10. 건물·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|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|
| 11.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|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(환급세액) 신고명세서 |
| 12.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, 제107조 및 제121조의13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| 영세율 매출명세서 |

- 1. 10 8 2
- 2. 39
- 3. 46 1

4. 46 1

5. 46 3

6. 55 2
가
()

7. , .

8. •

9. 55 1

10. • 가

11. 가가
()

12. 21 24
「 」 105 1 ,
107 121 13

1

1

1. 21 24 : 101

2. 「 」 105 1 : 「 」

106 12 「 • • • 가가
」 4

92 () 51 ()
• , ()
51 (" ")가
20
()

1.

2.

3.

2

가

20

2

()

가 3

.

93 ()

가

51

2

()

,

1

3

1.

:

2.

:

3. 14 1

:

가

(

2

)

4.

:

5.

가

:

1

94 ()

가

1.

가

2.

3.

가

가 51

20

()

1.

2.

3.

1

2

1

2

95 ()

52

1

가가

가가

가가

「 가가 」

()

1.

2.

3.

가

가가

4.

52

1

가 , 가
81 4 82 .

$$\text{과세표준} = \text{해당 용역등의 총공급가액} \times \frac{\text{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}}{\text{대가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}}$$

= 가 × 가
가

가
가

52 1 가 가

1. :
2. 「 」

1. 「 」 52 1 2 " 「 」 98 1
2. 1

52 4 가 가 가가
가가 「 」

.< 2014.2.21.>

- 1.
2. 가
3. 가 가 가가
- 4.

96 () 53 1 " ,

96 2() 53 2 1
" " 「 」 2 1 1 ()
" ")

1. (光)
가

2. 1
53 2 3

1. , ,
가

2. 가·

3.

2) (, () () .
53 2 4 가가 가가

1.

2. 가 ,

3.

53 2 4 .
59 가 가)
가 (.)

53 2 6 .

1. 가

2. 가

53 2 6 .

[2015.2.3.]

2

97 () 가 .

54 .

1

98 () 54 1 5 .

99 () 54 5 " " .

1. 가가 가 가 (「 」)
가

2. 「 」 32

3.

4. ,

100 () 55 1 " " , ,
() 109 2 7 .

101 () 21 24 가가

. < 2015.2.3.>
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법 제21조제2항제1호의 경우 |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(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). 다만, 소포우편을 이용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. |
| 2. 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경우 |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. 이 경우 제31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같은 항 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한다. |
| 3.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의 경우 | 가.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「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·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|
| | 나. 가목 외의 경우 내국신용장 사본 |
| 4. 제31조제2항제2호의 경우 |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5. 제31조제2항제3호의 경우 |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| |
| 6. 제31조제2항제4호의 경우 | 대한적십자사가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|
| 7. 제31조제2항제5호의 경우 | 가. 제31조제2항제5호라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나.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|
| 8. 법 제22조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|
| 9. 법 제23조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. 다만,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로 한다. |
| 10.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|
| 11. 제33조제2항제3호의 경우 | 가. 임가공계약서 사본(수출재 화임가공용역을 해당 수출업자와 같은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 나. 해당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)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|
| 12. 제33조제2항제5호의 경우 |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선(기)적완료증명서. 다만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하고, 「개별소비세법 시행령」 제20조제2항제3호 및 「교통·에너지·환 |

| | |
|--|---|
| | 경세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석유류 면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로 한다. |
| 13. 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6호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(군납)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전력, 가스 또는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화공급기록표,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. |
| 14. 제33조제2항제7호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. 다만,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 및 외화매입증명서로 한다. |
| 15. 제33조제2항제8호 경우 |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|
| 16. 제33조제2항제9호의 경우 |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|
| 17.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8조의 경우 |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|

21 24 33 가가
 1 , 가가 107 4
 「 가가 1
 가 1 1 1
 2 17 3 () 1

6 . .

1

102 (.) 57 가가 .

51
1

103 (.) 57 1 4 " 가가 (通
脫) 가 "

- 1.
- 2.
- 3.

4. 46 4 가 가 가 가 가 가

5. 59 2
73 1

5

104 (.) 57 2
1. 가 (權衡)

57 1

2. (生産收率)

가

3. 가 , , , , , .

4. 가. , , , , ,

가

가가 가가

5. . 2 4

6.

1

32

가

가

105 () 「 」 11 , 16 58 2 가가 (19 , 38 , 38 2 38 4 , 39 , 41 , 43 , 46 , 47 106 .

106 () 59 48 · 49 107 5 54 , 57 . 가

107 () 59 2 15 . 「 」 62 「 59 2 2 " 가 24 가 1 가 90 2 91 1 59 2 2 가

- 1. , , 2. 3.

59 2 가 3 2 (" ") 25 (" ") 1 15

4 101 1 . 가 59 2 2 3 가

- 1. 2. 3. 4.

5 . 54 1 .

2 가

108 (가) 60 1 2 " "

60 2 3 4 " "

32 가

60 2 5 .

60 5 " " 74 5 57
가 32 46 3

102

60 7 1 " " (34 3)
가

60 7 2 " " 74 1 4

7

109 () 61 1 62 1 " " 4
800

61 1 2 " "

.< 2014.2.21., 2015.2.3.>

1.

2.

3. (,)

4.

5. 「 」 1 4

6.

7. , , , , , , , , , , 가
, , , , , , , , , , ,

8. 23 . , 1 7 9 11
61 1 가(" 가")

1

9.

10. 「 」 208 5 (" 1
")가 . 「 」 208 5 " 1

" " " " , " (가) " "

(가) " , . 가

11. 가 가 1

1 2 8 1 (曆年)

가 12

가 1 .< 2014.2.21.> 가 1

61 3 7 11 1
()
가

- 1.
- 2.
- 3. 가
- 4.

110 () 62 1 2 20
61
,
62 1 2 61
1 62 1 61
, 62 1 1
62 1 2 61 가 62 1
1 61
가 109 2

61 1 1 가 (" "
) 1 가 109 1 62 1
61 1 1 1
1 , 61 1 1 1 가 109
1 61 1 2
가 70
가

61 1 1 , 61 1 1
1 가 109 1 61
1 2

111 () 59
66 " 가 " " 가"
63 2 " 가가 " 가가

가
 63 3 2 가 2 1 4
 , 2 1
 63 3 3 가
 , " " 60 3 1

$$\text{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} =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}}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}} \times \frac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대가}}{\text{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}} \times \text{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}$$

$$= \text{가} \times \text{가} \times \text{가가}$$

63 6 " " .

112 () 64 가 가 ()
 38 43 가 , 10 8 2 가 ")
 ") () . <

2014.2.21.>

- 1.
2. ()
3. ()
- 4.
5. 가 (, 10 , 가)
 1 2) 가 가 가 가 가
 , 가 가 가 가 가 가 가
 " 가 (")
 66 2 5 . 3 4

1. 1 1 3

$$\text{재고납부세액} = \text{재고금액} \times \frac{10}{100} \times (1 - \text{제 111 조 제 2 항의 표의 구분 에 따른 부가가치율})$$

$$= \frac{\text{재고금액}}{100}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 가가})$$

2. 1 4

$$\text{재고납부세액} = \text{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} \times (1 - \text{제 111 조 제 2 항의 표의 구 분에 따른 부가가치율})$$

$$= \text{해당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}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 가가})$$

3. 1 5

가.

$$\text{재고납부세액} = \text{취득가액} \times 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}) \times \frac{10}{100} \times (1 - \text{제 111 조 제 2 항의 표 의 구분에 따른 부 } \text{가가치율})$$

$$= \frac{\text{취득가액}}{100} \times (1 - \frac{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})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 가가})$$

가

$$\text{재고납부세액} = \text{취득가액} \times 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}) \times \frac{10}{100} \times (1 - \text{제 111 조 제 2 항의 표 의 구분에 따른 부 } \text{가가치율})$$

$$= \frac{\text{취득가액}}{100} \times (1 - \frac{25}{100} \times \text{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}) \times 10 \times (1 - \frac{111}{2} \text{ 가가})$$

3 " 111 2 가가 "

1 . 90

가 가 1

5 6

.< 2014.2.21.>

5 가
57

113 () 65 1 " "

65 1 가가 가

1. : 104 4

2. 1 : 108 8 가가 가
2

65 1

(「 」 160)가

가 가 5 가

1. 「 」 163 「 」 121

2.

114 () 66 1 가가 7 1

7 10

66 2 " " 66 1

(" ") 가

가 66 1 3 1

66 2 67 1 가가

가가 ()

1.

2.

3. 가

4.

5.

66 4 67 1 가가

68 2 「 」 47 2 47 4

가 가가

「 」

- 1. 46 1
- 2. 63 3
- 3. 65

가 66 5 67 3
 , 가 가

63 3

67 1 21 24

101 1

6 67 1

115 (가 가) 69 2 " 가
 (公簿)

116 () 62 , 70 2
 70 1 2
 () .<

[2014.2.21.>](#)

- 1.
- 2.
- 3.

1 가 70 3 7
 10 109 4
 1 가 61 1

.< [2014.2.21.>](#)

8

117 (•) 71 1 2

- 1.
- 2.
- 3. 가 가
- 4.
- 5.
- 6.

가 가가 가
 가 32 36

71

71 3

35 5

5 가 「 」 13 1

118 () 73 2 " "

1. 「 」 6

2. (11 8)

3. 「 」 ()

73 (1 2)

()

가

- 1.
- 2.
- 3.

119 (•) , 74 2

- 1.
- 2.
- 3.
- 4.
5. (標札) (揭示)
- 6.
- 7.

120 () ,

< 26071 ,2015.2.3.>

1 () , 37 2 가 2015 4 1

, 40 1 1 , 2 • , 7 8 , 71 1 8 , 73 1 13 •

14 , 3 • 5 96 2 2015 7 1 .

2 ()

3 (가가) 38 2

4 (• 가가) 40 1 1 , 2 • 8

2015 7 1 • • •

5 (가) 64 1

가

6 (가) 69 18

7 () 70 1 4 2015 1 1

8 () 84 2 8 2015 1
1

9 (가가) 2015 7 1 ,
2015 7 1 . . 40 1 1 ,
2 . 8 .